

제1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위원회」 안건

2006년 하반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계획(안)

2006. 8. 17

재정경제부
정보통신부
기획예산처
중소기업청

과학기술부
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중소기업특별위원회

●●● 목 차 ●●●

I. 그간의 추진실적 및 평가	1
II. 상생협력정책의 기본방향	3
III. 주요 추진과제	4
1. 협력업체 역량개발 지원	4
2. 공정거래를 통한 신뢰구축 지원	8
3. 기업생태계 혁신 지원	12
IV. 향후 추진계획	14
<별첨1> 과제별 추진일정	15
<별첨2> 세부 추진과제	16

I. 그간의 추진실적 및 평가

1. 추진배경

□ '02년 이후 대·중소기업간 수익성, 근로자 소득 등에서 양극화가 지속

* 대중소기업 영업이익률 격차: ('02) 22%p → ('03) 3.6%p → ('04) 5.3%p → ('05) 28%p

*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수준: ('02) 62.2% → ('03) 60.9% → ('04) 57.2% → ('05) 57.6%

○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는 대기업의 수익중시경영과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취약 등에 기인

* 협력중소기업의 경우 대·중소기업간 수직하청관계와 시장지배력 격차 등도 원인

□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를 해소하고 동반성장 달성

2. 추진실적

□ 지난 해 부터 5차례의 대통령 주제 상생협력회의*를 통해 상생협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

○ 상생협력의 제도적 기반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06.6월 발효)

* 주요내용: 「상생협력위원회」 설치, 상생협력 기본계획 수립, 불공정거래 특례 등

○ 상생협력 핵심 과제의 본격적인 추진기반 마련

* 성과공유제 확산·수급기업투자펀드 조성(산자부), 불법 건설하도급 근절(건교부), 하도급 협력증진 3대가이드라인 제정(공정위), 직업훈련컨소시엄(노동부),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중기청) 등

□ 기업에서도 최고경영자를 중심으로 상생협력의지 확산

- 주요 그룹에서 상생경영을 모토로 선언하고 계열사에 전파
 - * SK '행복동반자경영, 삼성 '상생과 나눔경영, LG '정도경영, 현대차 '상생투명경영 등
- 계열사에 전담조직 설치 등 상생경영체제 정비
 - * 포스코(중소기업상담센터), 한전(중소기업기술상담센터), LG텔레콤(PRM팀), 삼성SDI(협력회사지원센터) 등
- 10대 그룹의 상생경영투자도 대폭 확대
 - * ('04) 6,406억원 → ('05) 8,317억원 → ('06계획) 11,369억원

□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설치('05.10), 대·중소기업 협력기금 조성('05.11),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설립('04.12) 등 상생경영 지원체제 구축

3.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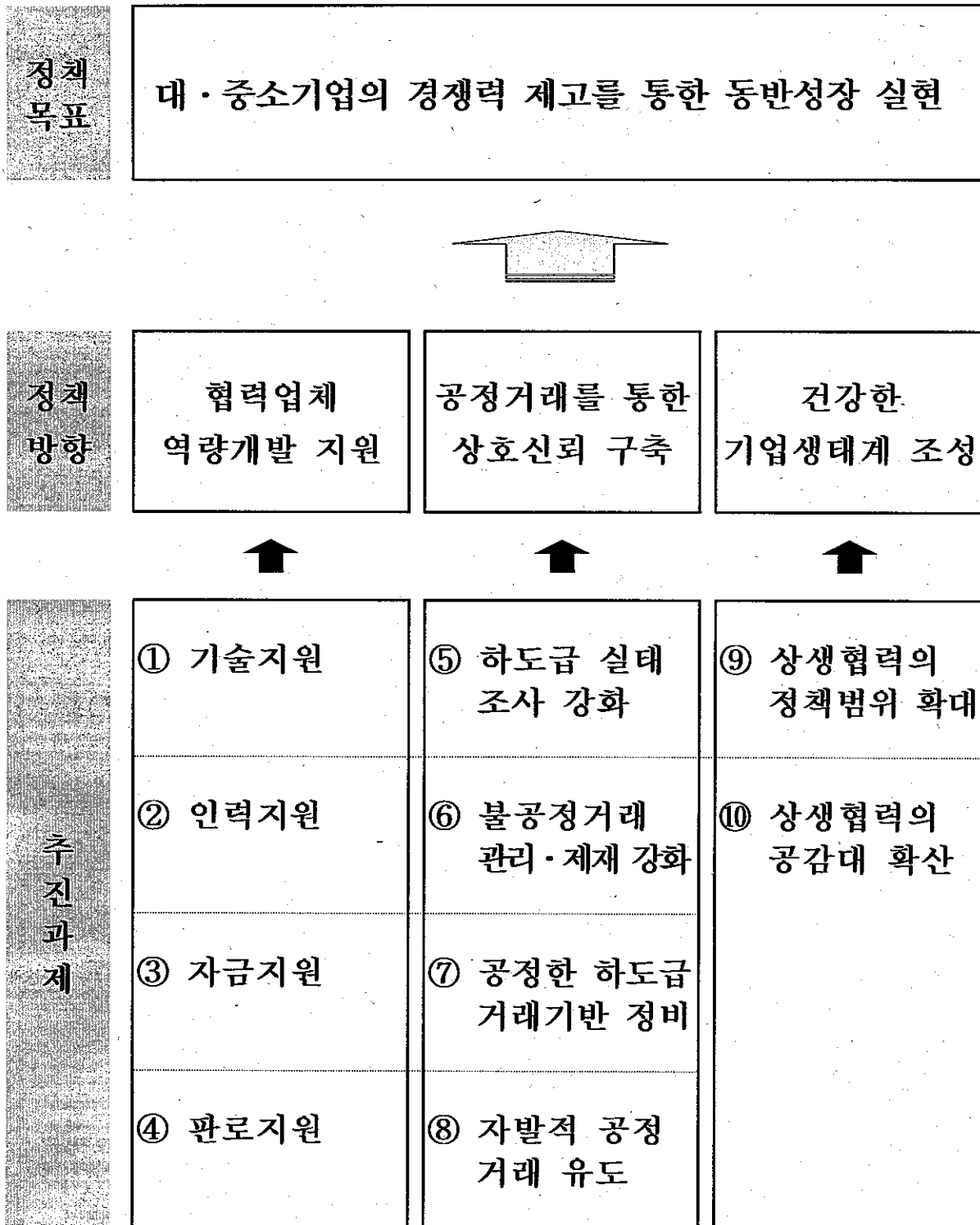
□ 정부의 정책의지와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상생협력의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공감대 토대를 마련

- 대기업 최고경영자의 상생경영 의지가 작용하여 상생인식이 그룹 전체로 확산되는 추세
- 일부에서는 상생협력을 단기적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어 기업 전반으로 확산에 걸림돌로 작용

□ 상생협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여 기업문화로 정착

- 상생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정책과제의 가시적 성과 도출
- 10대→30대 그룹, 1차→2,3차 협력업체, 제조업→유통·건설·에너지 분야 등으로 상생협력 정책범위를 확대

II. 상생협력정책의 기본방향



Ⅲ. 주요 추진과제

1. 협력업체 역량개발 지원

가. 기술 지원

□ 대·중소기업 공동기술개발 확대 (산자부/건교부)

- R&D 기획단계에서 개발·구매까지 대·중소기업 공동 참여(산자부)
 - * 06.6월 16건 205억원 지원, 06.하반기 45건, 923억원 지원계획
 - * 구매확약요건 강화 등 제도개선('06.3분기, 부품소재 로드맵 수립 및 과제 발굴('06.12월)
- 대·중소기업 공동R&D 과제를 우선 지원하고, 기술공유사업 참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건교부)
 - * 건설산업기본법 상 상호협력평가기준 개정('06.하반기, '07년 시행)

□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재료 국산화 사업 추진(산자부)

- 대기업·정부 공동으로 중소 장비·재료 업체에 대해 「원천기술 개발→신뢰성 평가→인증→양산라인 투입」을 일괄 지원
 - * 평가패 참여기업 협약식 개최('06.9월) 및 평가패 가동('06.10월)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지속 확대(중기청)

- 지원예산을 확대하고, 수요기관을 중견기업으로도 확대
 - * ('05) 100억원, 26개 기관, 87개 과제 → ('06) 160억원, 35개 기관, 120개 과제

□ 대·중소기업 그린파트너십 확산(산자부)

- 대기업의 협력업체에 공정지도, 청정기술 이전 등을 통한 환경경영 체제구축 지원을 1차 협력업체에서 2, 3차 협력업체로 확대
 - * 2,3차 협력업체 그린파트너십 확산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 추진('06.10월)
- 업종별로 표준화된 그린파트너십 모델 개발·보급 확대

나. 인력 지원

□ 대기업 퇴직 전문인력 활용 중소기업 경영자문(중기청)

- 자문단 및 지원 중소기업 확대 (06년 자문단 200명, 200개사 지원)
 - * 기업당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자문수당의 75%를 지원
- 자문단에 퇴직 중소기업 CEO·임원 등도 포함하여 2,3차 협력업체에 대한 경영지원 확대

□ 대기업 인력의 중소기업 파견 지원(노동부)

- 제조업 또는 지기식기반 서비스 중소기업이 대기업 전문 인력 활용시 인건비 지원 (중소기업전문인력 활용장려금)
 - * 지원액 : 전문인력 1인당 월 120만원(임금액의 3/4 한도)을 1년간 지원
 - *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06.1월 시행), 1,580개 사업장 158억원 지원('06.6월)

□ 대·중소기업 직업훈련컨소시엄 지원(노동부)

- 대기업 직업훈련원을 중소기업의 훈련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훈련시설·장비, 인건비 등 지원
- 컨소시엄 운영기관 및 참여기업 지속 확대 추진
 - * ('05) 47개, 참여기업 33천개, 지원액 398억원 → ('06) 60개, 참여기업 43천개, 지원액 450억원

□ 비정규직 직업능력개발 활성화(노동부)

-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를 도입, 비정규직에게 훈련비용을 사전지급(1인당 100만원, 5년 300만원 한도)하고 훈련과정 선택·수강
 - * '06. 4/4분기 시범 실시(6천명), '07년 2만명, 217억원
- 비정규직 수요가 많은 직종에 대해 자격증 취득과 연계한 e-learning 교육 지원('06년 25개 과정, 15억원)

다. 자금 지원

□ 수급기업투자펀드 제도개선(산자부)

- 대기업이 신·기보에 일정 금액을 출연하고, 이를 재원으로 대기업의 협력중소업체에 자금 지원
 - * 대기업 출연금 세액공제, 상생협력 우수기업 포상시 가점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
- 펀드 지원대상을 1차 협력업체에서 2,3차 협력업체로 확대
 - * 수급펀드 지원업체 추천 및 업체 심사, 수급기업펀드 발행(06.4분기)

□ 전력·전기산업 전문투자조합 결성(산자부)

- 전력·전기분야 창업·벤처기업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창업 투자조합 결성 추진(06년 2개, 각 250억원 규모)
 - * 업무협약 체결·출자자 모집('06.3분기), 조합결성·벤처지원('06.4분기)

□ 상생협력에 대한 세제, R&D 등 지원 강화(재경부/산자부)

- 대기업의 중소기업 R&D지원, 유휴설비 이전 등에 대한 조세특례 지원 추진
 -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반영 추진('06.하반기)
- 산자부 R&D과제 선정평가지 상생협력 우수기업에 대해 가점 부여 추진('07년)

□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개선(노동부)

-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사용범위를 현행 사업장 단위에서 협력업체·하청업체 근로자 등에 확대 검토
 - * 노동연구원 용역결과('06.5~10월)를 토대로 제도개선안 마련, 제도개선 추진('07)

라. 판로 지원

□ 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 균형발전 추진(산자부)

- 지역별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구성·운영('06.10~12월)
 - * 3개 권역(경기, 경남, 충·남북)을 시범지역으로 지정·실시 후 확대 추진
- 대형유통점 전문가의 중소유통업체 맞춤형 교육지원('06.7~12월)
 - * 전국 16개 지역(광주, 대구, 부산 등)에 대해 교육 실시
- 「유통산업 상생협력 박람회」 개최('07.5월)

□ 대기업·정부 공동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산자부/중기청)

- 세계일류상품전(핀란드, 9월), 부품소재산업전(일본, 10월) 공동 참가
 - * 대중소기업 공동참여 플랜트 사업타당성 조사 지원('06.3분기), 「대중소기업 벤더협력 협의회」 개최('06.4분기)
- 대·중소기업 공동 시장개척단 파견 및 대기업 해외물류 시설 및 유통망을 활용한 중소기업 제품 판로지원
 - * 대기업 해외물류센터 중소기업 공동 활용사업 추진('06.하반기)

□ 대·중소기업 해외건설 공동수주 지원(건교부)

- 중소기업 해외수주지원센터 설립 및 해외건설인력 D/B 구축('06.4월)
 - * '06.7월말 현재 해외건설 유경험자 864명 등록
- 대·중소건설업체 해외공동진출시 EDCF, KOICA 개발조사 사업 및 시장개척자금 지원시 우대

2. 공정거래를 통한 신뢰구축 지원

가.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강화**

□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및 관리 강화(공정위)

- 제조업, 건설에서 서비스업까지 포함하는 등 **조사업체 확대**
 - * 조사대상업체 : (04) 4만개 → (05) 5만개 → (06) 9만개 →(07) 10만개
 - * 하도급법 위반 혐의업체 비율 : ('04) 65.8% → ('06) 55.0%,
현금성 결제업체 비율 : ('04) 79.1% → ('06) 82.5%
- **법위반 혐의업체에 대한 시정 촉구 및 시정조치('06.8~12월)**
 - * 법위반혐의 불인정 및 미시정 업체 현장 조사('06.12월)

□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를 통한 불공정거래 개선(중기청)

- * 조사대상 : ('05) 1,016개 업체 → ('06) 2,500업체 (위탁 1,000개, 수탁 1,500개)
- 정기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및 원자재가 변동 등에 따른 **납품단가 변동 실태조사 실시('06.6~12월)**
 - * 자동차·전자부품중 35개 세부품목을 선정, 납품단가 변동현황 조사

□ 부당 하도급단가 인하 신고센터 운영(공정위)

- 중기중앙회, 건설협회 등과 연계하여 활성화 유도('07년)
- 불공정 하도급거래 신고포상금제 도입 추진('07년)

□ 유통분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강화(공정위)

- 납품업체 서면실태조사('06.7~8월, 3천개), 법위반 혐의가 있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실시('06.10~12월)

나. 불공정거래 관리제재 강화

□ 공정거래 협력네트워크 운영(공정위)

-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의 효과적 개선을 위해 8개 부처*간 협력네트워크 구축('06.4월)

* 재경부, 산자부, 공정위, 건교부, 정통부, 조달청, 중기청, 금감위(금감원)

-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및 제재 등 정책공조 추진

□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공정위)

- 하도급법 상습 위반사업자에 대한 벌점누진제 도입,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부과시 제정 등 제재 강화

* 최근 3년간 하도급법 3회 이상 위반업체 318개사

- 하도급법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 추진('07년)

□ 건설하도급 거래의 공정·투명성 확보(건교부)

- 원도급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 하도급자 선정·관리의 적정성 심사를 강화

- 하도급 공사정보망을 구축('06년말)하고 '07년 하반기부터 본격 운용

□ 불법 하도급 근절 및 건설근로자 복지증진(건교부)

- 불법다단계 하도급 신고센터를 건교부와 국토관리청에 설치('06.7월)하여 신고접수시 현장조사 및 처분 요구

-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개선방향을 확정하고('06.8월), 최종 로드맵 마련('06.9월)

다. **공정한 하도급 거래기반 정비**

□ IT분야 법령·제도 개선(정통부)

- 기술자료 임치제도(Escrow)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 선정시 기술자료 임치기업을 우대토록 '기술성평가기준' 개정('06년말)
 - * 소프트웨어 임치제도 운용현황 : ('03) 13건 → ('04) 68건 → ('05) 82건
- 통신사업분야의 상생협력 해외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가이드라인으로 활용('06.8월)
-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시 상생협력 정도, 불공정거래 등을 고려토록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심사 기준' 개정('06년말)

□ R&D 정책자금 지원대상 선정시 감점제도 도입(과기부)

- 하도급 벌점 과다업체가 신청한 국가 R&D과제 선정평가지 일정 범위내 감점 부여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07년)

□ 하도급 계약금액 조정제도 개선(재경부)

- 원자재 가격·환율 변동에 따른 특정물품의 가격변동시 총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토록 단품슬라이드제도 도입
- 계약금액조정 신청권자를 현행 원도급자에서 하청업자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라. **지발적인 하도급 공정거래 유도**

□ 성과공유제의 지속 확산(산자부)

-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한 **인프라 확충**
 - * 업종별 표준계약서 개발, 성과공유제 전문가 양성, 지방설명회 개최
- **공기업의 성과공유제 도입시 수의계약 허용을 위해**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 개정 추진('06.하반기)

□ 자율적 협력증진을 위한 3대 가이드라인 보급 확대(공정위)

- 바람직한 계약모델, 협력업체 선정, 하도급 관련 기업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대한 3대 가이드라인 마련('06.6월)
- 가이드라인 활용기업에 대한 **과징금 경감,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 하도급 공정거래 교육 및 홍보 강화(공정위)

- 전국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상시교육체계 마련**
 - * 16개 시·도 상공회의소·건설협회 등과 공동으로 법위반 예방교육 강화('06.6월 6,086명)
-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의 임직원에 대한 **교육명령제 도입**
 - * 하도급법 위반 시정을 위한 교육명령지침 제정('06.10월)

□ 수·위탁 분쟁도우미제도 운영 확대(중기청)

- 납품대금 미지급, 부당한 거래단절 등 대·중소기업간 수·위탁거래 분쟁해결을 위한 **전문 법률자문 지원 확대**
 - * 추진실적('06.4~7월말) : 13건 접수 (11건 완료, 2건 진행중)

3. 기업생태계 혁신 지원

가. **상생협력 정책범위 확대**

□ 제조업 중심에서 유통·에너지로 상생협력 분야 확대(산자부)

- 지역별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등 유통분야 상생협력 강화
 - * 지자체, 대형유통점, 재래시장 등으로 구성하여 '상호협력의 장' 마련
- 전력전기산업 전문투자조합, 대·중소기업 에너지산업 해외진출 협의회 구성 등 에너지분야 상생협력 확산

□ 1차 → 2,3차 협력업체로 정책범위 확대(산자부/노동부)

- 수급기업투자펀드 지원대상을 2,3차 협력업체로 확대
 - * 수급펀드 지원업체 추천 및 업체 심사, 수급기업펀드 발행('06.4분기)
- 대·중소기업 그린파트너십을 1차 협력업체에서 2,3차 협력업체로 확대
-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사용범위를 1,2차 협력업체 근로자로 확대 추진
 - * 노동연구원 용역('06.5~10월), 제도개선안 마련·추진('07년)

□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확대(중기청)

- 기업간 협력알선 네트워크(Match-net) 구축, 중견·중소기업 간 상생협력협약 체결 등 협력 확대
- 전문생산 중소기업협업체(ICMS) 육성을 통한 분·협업화 촉진
 - * 협업생산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개정
-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공동 기술개발, A/S 지원 센터 운영 등 공동사업 활성화

나. **상생협력의 공감대 확산**

□ **상생협력 지식커뮤니티 구축(산자부)**

- 상생협력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강화하고 상생협력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상생협력 지식커뮤니티'를 구축
 - *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내 「상생협력연구회」 발족('06.7월)
- '상생협력 지역순회토론회'('06.9월), '상생협력 국제컨퍼런스' 개최('06.10월)로 상생협력이론 및 발전모델을 확산

□ **상생협약체 구축을 통한 협력의 場 마련(건교부/산자부)**

- 건교부 및 산하기관의 17개 사업장을 선정, 상생협약체 구성(발주자·원·하도급업체)·운영('06.4월~)
 - * 제도개선과제 발굴 및 부처간 이견조정 등을 위해 「건설산업상생협력위원회」 구성('06.6월)
- **업종별 상생협력위원회*** 운영을 통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사업 확산 도모
 - * 자동차, 전자, 기계, 조선, 유통, 금속·철강, 중전기 등 7개 업종별 위원회 구성

□ **노사간 상생협력 공감대 확산(노동부)**

-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과정**에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우수사례 평가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 확산
 - * '노사문화 우수사례 및 상생협력사례 경진대회' ('06.12월), 우수 사례집 제작·배포('07년)
- '**상생협력의 임·단협**' 확산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격차 완화
 - * 대기업 정규직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그 여유분을 협력업체 및 비정규직 임금개선에 활용

IV. 향후 추진계획

□ 상생협력 실무위원회 구성·운영(상생법 제11조) : '06.10월

○ 구성 : 산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급 및 민간 위원 25인 이내로 구성

- 정부위원 : 재경·과기·정통·노동·건교·예산처 차관, 국무조정실 정책차장, 공정위부위원장 등
- 민간위원 : 추후 선정

* 간사 : 산자부 산업정책본부장

○ 역할 : 위원회 심의안건의 사전 심의 및 조정, 부처별 상생협력 촉진시책 추진상황 점검

○ 개최 : 상·하반기 개최(실무위원회 구성후 개최예정)

□ 대통령님 주제 상생협력 성과보고회의 개최 : '06.12월(잠정)

○ 금년도 상생협력 민·관 추진실적 평가 및 향후 상생협력 추진방향 보고

□ 상생협력추진 기본계획 수립 : '07.1월

○ 상생협력추진 기본계획(3년 단위)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상생협력위원회에 보고

○ 주요 내용 : 상생협력촉진시책 기본방향, 상생협력 연차별 목표, 상생협력 사업계획 수립 등

추진과제	주관부처	협조부처	일정	비고
1. 부품·소재 공동기술개발사업	산자부		06하	계속
2. 대·중소건설업체 공동기술개발 확대	건교부		07	신규
3.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재료 국산화사업	산자부		06하	계속
4.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중기청		06하	계속
5. 대·중소기업 그린파트너십 확산	산자부		06하	계속
6. 대기업 퇴직 전문인력 활용 중소기업 경영자문	중기청		06하	계속
7. 중소기업 인력파견 지원	노동부		06하	계속
8. 대·중소기업 직업훈련컨소시엄	노동부		06하	계속
9. 비정규직 능력개발 활성화	노동부		06하	신규
10. 수급기업투자펀드 제도개선	산자부		06하	계속
11. 전력·전기산업 전문투자조합 결성	산자부		06하	계속
12. 상생협력에 대한 세제, R&D 지원	재정부/산자부		06하	신규
13.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개선	노동부		07	신규
14. 유통분야 상생협력	산자부		06~07	계속
15. 해외시장 개척 지원	산자부/중기청		06	계속
16. 해외건설 공동수주 지원	건교부		06하	계속
17.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강화	공정위		06하	계속
18.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중기청		06하	계속
19. 부당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공정위		06하	계속
20.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	공정위		06~07	계속
21. 공정거래 협력네트워크	공정위	8개부처	06하	계속
22. 하도급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 강화 및 하도급법 체제 개편	공정위		06하	신규
23. 건설산업 하도급 거래의 공정·투명화	건교부		07	신규
24.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	건교부		06하	신규
25. 기술자료 입찰제도 활성화	정통부		06말	신규
26. IT분야 대·중소상생협력 이행점검 및 법·제도개선	정통부		06하	신규
27.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심사기준 개정	정통부		06하	신규
28. R&D 평가시 감점 도입	과기부		07	신규
29. 하도급 계약금액 조정제도 개선	재정부	중기청	07	신규
30. 성과공유제 확산	산자부	재정부/예산처	06하	계속
31. 3대 가이드라인 보급	공정위		06하	계속
32. 하도급 공정거래 교육·홍보	공정위		06하	계속
33. 수위탁 분쟁도우미 확대	중기청		06하	계속
34. 기업간 협력알선 네트워크(match-net)	중기청		07	신규
35. 전문생산 중소기업협업체 육성	중기청		06하	신규
36.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공동사업 활성화	중기청		06하	계속
37. 상생협력 지식커뮤니티 구축	산자부		06하	계속
38. 상생협의체 구축을 통한 협력의 장 마련	건교부		06하	계속
39. 노사간 상생협력 공감대 확산	노동부		06~07	신규
40. 상생협력의 입·단협 지원	노동부		06	신규

1 부품·소재 공동기술개발사업

【추진현황】

- 부품·소재 대·중소기업이 R&D기획 단계부터 공동 참여, 전주기에 걸친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기술개발과 구매를 연계하는 시장지향적 기술개발 지원
 - '00-'05년 기간중 정부지원금 2,311억원을 투입하여 부품·소재 공동기술개발과제 94건 지원
 - 이중 대기업-중소기업간 공동개발과제가 72%(68건)를 차지
- '05년부터는 수요대기업-중핵기업-부품소재업체가 참여하는 모듈부품 공동개발 방식을 도입, 상생협력 시스템을 고도화
 - * '05년 공동기술개발사업으로 부품·소재 「10대 전략품목」 선정 지원
- '06.6월 기술성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 '모듈부품 개발', '핵심 원천소재 개발', '미래수요 창출' 등 16건의 신규 공동기술개발 과제에 총 205억원 지원

【향후 추진계획】

- '06년도 공동기술개발사업 계속과제에 대해 중간평가를 거쳐 금년도 개발사업비 지원(45건, 923억원)('06.7~'06.11)
- 수요대기업과 부품·소재 중소기업이 R&D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구매확약요건 강화 등 기술개발제도 개선('06.9월)
- '07년도 공동기술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부품·소재 로드맵 수립 및 과제 발굴('06.12)

2 대·중소건설업체 공동기술 개발 확대

【추진현황】

- 대·중소업체 공동기술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 선도적 공동기술개발 과제(5개 분야 10대 과제)를 선정하여 건설교통 R&D 예산('06년 2,620억)을 최우선적으로 지원
 - 정부산하 기관의 건설 R&D 개발 투자 확대 유도
- 대·중소업체간 기술공유시 입찰시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방안 강구 등
- 10대 선도과제중 5개 과제를 우선선정하고('06.5) 나머지 과제선정은 「건설교통 R&D 혁신 로드맵」과 연계검토
- 기술공유시 인센티브 부여방안은 건산법상 상호협력평가기준*에 반영하는 (안)을 업계협의('06.5)를 거쳐 마련, 기준개정 예정('06.10)

* 대기업 등 일반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중소건설 업체와 협력실적을 평가, 시공능력 평가 및 PQ 심사시 가점 부여 등 우대조치

【향후 추진계획】

- 하반기중 10대 선도과제 선정을 마무리하고 참여 대·중소기업간 역할분담 방안 등 세부추진계획 마련('06.10)
- 산하기관 R&D 투자 활성화 방안은 관계기관 협의('06.6)를 거쳐 10월중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
- 상호협력평가기준은 기술공유 평가항목 신설 및 배점비율 조정 관련 의견수렴을 거쳐 하반기중 개정완료('07년 시행)

【추진현황】

- 대기업 주도의 개방형 평가웹 구축을 통해 국산 장비·재료의 신뢰성 검증 지원 계획 수립
 - 중소 장비·재료 업체에 대해 대기업·정부 공동으로 「원천기술 상용화 개발 → 신뢰성 평가 → 인증 → 양산라인 투입」 일괄 지원 시스템 구축
 - 양산라인을 기존 계열화된 협력업체외 신기술 개발업체에도 개방
 - * 차세대 장비·재료 : 원천기술 개발과 연계 평가인증·구매 일괄 지원
 - * 수입대체 장비·재료 : 기보유 기술의 양산테스트 서비스
- 장비·재료 원천기술 상용화 기술개발
 - 산·학·연 원천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반도체장비(45~32nm급) 공동 기술개발 및 국제특허 확보를 통해 세계시장을 선점
 - 수요 대기업이 초기단계부터 직접 참여 및 구매 협약(매칭 펀드)
 - 정부는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고, 원천기술을 보유한 학·연과 장비·재료 업체의 Match-Making 지원
 - * 2007~2011 5년간 총사업비 2,500억원 (정부 1,750억원, 민간 750억원)
 - * 2013년까지 수입대체 총 24조 1,443억원, 고용창출 연 1만 7천명 전망

【향후 추진계획】

- 「평가라인 추진위원회」 발족 및 평가대상 장비·재료업체 선정(9월)
 - * 대기업·학계·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통해 유망기업 3~5개사 선발
- 평가웹 참여기업 협약식 개최(9월)
- 평가대상 장비 투입 등 평가웹 가동 개시(10월)
- 원천기술 상용화 기획 및 공모(12월)

4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추진현황】

- 수요기관(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구매를 조건으로 중소기업의 신기술제품 개발비용을 정부가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 및 판로확보를 통한 경영안정 지원

* 개발비의 75%이내 2억원까지, 개발기간 2년 이내의 과제를 지원

□ 지원실적

구분	'02	'03	'04	'05	계
지원금액(억원)	9	40	40	100	189
수요기관수(개)	1	1	8	26	26(누계)
지원업체수(개)	13	49	40	87	189

○ '06년 상반기까지 총 33개의 수요기관이 참여

* '02년도 국방부의 참여를 시작으로 국방, 철도, 소방 등 공공부문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 '05년부터 포스코, 두산엔진, 삼성전자 등 7개 대기업의 참여로 민간부문으로 확대

* '06년 상반기 사업에 KT, 두산인프라코어, SKC 등 6개 대기업 추가 참여(총 13개 대기업 참여)

【향후 추진계획】

- 하반기 추가공고를 통해 참여대기업을 선정하고, 지원예산 및 수요기관의 지속 확대 추진

* ('05) 100억원, 26기관, 87과제 → ('06 계획) 160억원, 35기관, 120과제

- '07년부터 민간부문 참여 수요기관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여 다양한 과제로 더 많은 중소기업에 개발기회 제공을 추진

【추진현황】

- '03년부터 대기업인 모기업과 1차 협력업체간 그린파트너십 구축 사업 추진
 -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유한킴벌리 등 8개 모기업, 총 122개 중소기업이 참여하여 환경분야 상생협력체제 구축
- 전기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제지업종의 5개 시범사업 종료('06.6~8월)
 - 사업성과 분석 및 2,3차 협력업체 그린파트너십 확산방안 수립

【향후 추진계획】

- 그린파트너십 성과보고대회 개최를 계기로 2,3차 협력업체 그린파트너십 확산계획등 발표, 대·중소 상생협력 분위기 조성(10월)
 - '06.6~8월 종료예정인 5개 시범사업 성과발표를 위한 『대·중소기업 그린파트너십 성과보고대회』 개최
 - 시범사업* 종료 후 미참여 1차 협력사에 대한 그린파트너십 확산을 위한 자발적 협약 체결
 - * 대상기업 :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SK주식회사, 유한킴벌리
 - 전기·전자산업 2,3차 협력업체 그린파트너십 확산 계획 발표
 - 대·중소기업 그린파트너십 성공사례 발표 및 모범사례집 발간
 - * 참여협력사 현장취재 지원 등 대·중소 그린파트너십 기획홍보 추진
- 대·중소기업 그린파트너십 확산사업 추진(4/4분기)
 - 2,3차 협력업체 그린파트너십 확산사업 시작
 - 시범사업 종료 5개 업종 대기업간 그린파트너십 성과 이전확산사업 추진

【추진현황】

□ 대기업 퇴직 전문인력을 중소기업 현장에 재투입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및 퇴직인력에게 재취업 기회 부여

* 기업당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자문수당의 75%를 정부에서 지원(1일 97,000원)

○ 현장방문 경영자문

- 기업이 희망하는 전문인력을 중소기업 현장에 파견, 지원금 한도 내에서 경영자문 수행

○ 협력회사 경영자문 지원

- 참여 대기업 및 유관기관의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경영자문 실시

□ '06년 추진 현황

○ K-SCORE 자문단 및 중소기업 지원 확대

* 협력자문단 200여명으로 확대, 중소기업 200개사 지원 목표

○ 대기업(기관)과 업무협약 확대('06.5.11)

* 현대자동차 등 19개 대기업,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8개 기관

【향후 추진계획】

□ 공공기관 퇴직 전문가, 퇴직 중소기업 CEO·임원 등을 포함하여 중소기업간 협력사업으로 확대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 사업주가 전문인력을 신규로 채용하거나 대기업으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 받아 사용하는 경우
 -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전문인력 1인당 월 120만원(임금액의 3/4을 한도)을 1년간 지원
 - * 지식기반서비스업 : 부가통신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관련업,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 *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 제조업 500인 이하, 지식기반서비스업 100인 이하
 - * 전문인력(노동부 고시) : 경영기획담당자, 제품기술개발자, 이공계 석·박사 등

□ 사업추진 현황

- 지원대상 확대 및 명칭 변경(고용보험법시행령개정, '06.1월부터)
 - 전문인력의 채용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을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으로 명칭 변경
- 사업 추진 실적
 - '06년(6월말까지) 추진실적 : 158억원 (1,580개 사업장)지원
 - * '05년 추진실적 : 91억원 (831개 사업장) 지원
 - * 노동부, 전경련, 중기협과 공동으로 사업주 설명회 개최('06.4.26)

【향후 추진계획】

- 홍보책자 제작, 인터넷 홍보 등 홍보활동 강화

【추진현황】

□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자체 직업훈련원을 중소기업의 훈련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훈련시설·장비, 운영비용의 일부를 지원

□ 추진실적

○ 훈련실적 : '01년 도입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구분	'01	'02	'03	'04	'05
운영기관(개소)	6	8	19	30	47
훈련인원(명)	4,091	9,931	20,436	38,333	70,991
참여중소기업(개소)	1,029	3,186	8,258	14,861	33,181
지원금액(백만원)	3,238	6,086	14,104	16,848	39,850

○ 취업률 : '05년도 컨소시엄의 양성훈련 취업률은 78.4%로 실업자 훈련 취업률 49.8%에 비해 높은 수준

* 컨소시엄 사업주·근로자 만족도 : 91.2% ('04. 직능원)

* 해외성공사례소개 ('04 Employment Outlook, '05.3 OECD 평생학습국제회의, 스웨덴)

□ 지원수준 인상 및 요건 완화

○ 지원수준 인상 : 시설장비비 10억원 한도 → 15억원

인건비 2,880만원 → 3,520만원 등

○ 지원요건완화 : 대학도 운영기관에 포함, 최소훈련인원 요건 완화

* 연간 1,000명 → 월 평균 연인원 200~400명

【향후 추진계획】

□ 컨소시엄 운영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

* '05년 47개, 참여기업 33천개, 지원액 398억원 → '06년 60개, 참여기업 43천개, 450억원

【추진현황】

- 비정규직의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충을 위해 비용부담, 시간 부족 등의 훈련 장애요인을 해소하는 특화사업 지원
 - 근로자직업능력개발카드제 도입(Individual Training Account)
 - 카드 쿠폰 형식으로 비정규직에게 훈련비용을 사전지급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훈련과정을 선택·수강
 - * 1인당 1년 100만원, 5년 300만원 한도내에서 실소요 훈련비 지원
 - 비정규직 대상 e-Learnig 과정 개설·운영
 - 비정규직 훈련수요가 많은 직종에 대해 자격증 취득과 연계한 e-Learning, Blended Learning 콘텐츠 개발 및 훈련 실시
- '06년 추진 현황
 -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실시를 위한 법령개정(고용보험법) 및 전산시스템 개발 추진중
 - 25개 직종(증권투자상담사, 메카트로닉스 등)을 선정, 비정규직 e-Learning 사업 공모('06.7.14~8.9)
 - * 「e-Learning 훈련기관-사업주(단체)-콘텐츠 개발업체」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자 공모

【향후 추진계획】

- '06년 4/4분기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시범운영(6천명)을 거쳐 '07년 3월부터 본사업 실시(20천명 ; 217억)
- 비정규직 대상 e-Learning 콘텐츠 개발 후 '06.12월부터 훈련 실시

10 수급기업투자펀드 제도개선

【추진현황】

□ 대·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 및 수급기업의 기술개발·설비 투자 지원을 위해 양질의 투자자금 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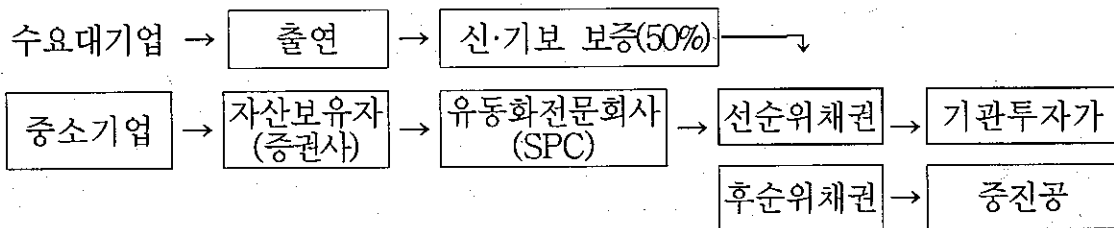
○ 부품·소재 중소기업들이 신용과 기술력만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급기업 투자펀드” 조성 추진

* 05년 117개 기업, 2,340억원 기지원

- 대기업을 신·기보에 일정 금액을 출연하고, 이를 재원으로 신·기보가 수급기업 채권(회사채)에 대해 보증(50% 수준)

* 중진공은 후순위채를 인수하여 신용을 보강하되 부실채권 발생시 신·기보와 분담

○ 대기업을 1차는 물론 2, 3차 협력업체를 지원대상으로 추천하고, 출연금액의 25배까지 자금지원



【향후 추진계획】

□ 수급펀드 참여 업체 및 참여규모 확정(8월)

* 삼성·LG전자, 하이닉스, LG필립스LCD, 삼성SDI, 동부아남, 포스코, 현대차 등 “대·중소기업 협력약정” 체결기업 및 상생협력 우수기업 대상

□ 수급펀드 지원업체 추천(수요대기업) 및 업체 심사(9월~10월, 중진공)

□ 수급기업펀드 발행(11월)

【추진현황】

- 연구개발된 전력산업분야의 우수 기술이 최종 상용화되어 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개발기술 사업화 지원 필요
 - 특히, 한전 등 공기업이 주요 수요처인 전력산업의 특성상 ‘연구개발’ - ‘상용화·벤처투자’ - ‘공공기관 우선구매’ 의 3각 연계할 경우 사업화 투자의 성공가능성이 타분야 보다 훨씬 높음
- 전력·전기 분야 창업·벤처기업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창업투자조합(2개, 각 250억원 규모) 결성 추진
 - * 전력·전기산업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협약식 체결(5.3) : 전력산업 기반기금(150억원), 한전 등 11개 전력 공기업(82억원), 호성/LS산전/현대중공업 32억원 등 총 264억 출자 합의
 - * 투자조합 운용조건 : 존속기한 7년, 전력전기산업에 80%이상 투자
 - 투자조합 운용주체 공모 결과, 한화기술금융, 포스텍기술투자 등 2개사 선정(6.14)

【향후 추진계획】

- 업무협약 체결 및 출자자 모집 : 7~8월
- 조합결성 및 벤처지원 개시 : 9월이후
 - * 투자조합내 투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력전기분야 유망 신기술보유 업체 발굴과 한전 등 공기업 우선구매 등과 연계하여 실효성제고

12 상생협력에 대한 세제, R&D 지원

【추진현황】

-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인센티브 마련 추진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기술·인력·자금·성과공유제·환경경영·정보화 등 지원근거 마련 (6.4 발효)
 - 상생협력 인센티브 T/F 운영 (1월~)
 - 상생협력 우수기업에 대한 공공조달시 가점부여, 하도급서면 조사 면제, 세제지원방안 등 추진

【향후 추진계획】

- 상생협력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협의(하반기)
 - 대기업의 중소기업 R&D지원, 유희설비이전 등에 대한 조세 특례 지원 검토
- 상생협력 우수기업에 대한 공공조달시 가점부여를 위해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개정 검토(하반기)
- 산자부 R&D 정책과제 선정시 상생협력 우수중소기업에 가점 부여 추진('07년 상반기)

【추진현황】

□ 목 적

-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사용범위를 현행 사업장 단위에서 대기업-협력업체, 원청-하청업체 근로자 등에 확대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제도개선 추진, 기업규모에 따른 복지격차 완화

□ 현 황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대기업 근로자 중심으로 운영
 - * '05년말 1,000인 이상 기업 63.3%, 300인 미만 기업 0.1%
- 현행 법령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위해서만 조성·사용이 가능토록 규정
 - 당해 사업장 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근무여건이 열악한 협력업체,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지원 미흡

□ '06년 추진 현황

-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용역 실시(5월)
 - 제도개선의 필요성 및 문제점,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수혜대상 확대범위 등 검토
 - *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사용 확대방안」 연구용역 중('06.5~10월)

【향후 추진계획】

□ 용역결과를 토대로 우리부 내부 제도개선(안) 마련('11~12월)

- * 노사간 이견이 있으므로 연구용역 결과를 검토하여 구체적인 추진일정 등을 결정

□ 노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제도개선 추진('07년)

14 유통분야 상생협력 강화

【추진현황】

- 유통분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으로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96년 유통시장개방 이후 유통산업이 점차 전문화·대형화되면서 지역에 기반을 둔 중소기업의 영업기반이 지속적으로 위축
 -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확산하여 대·중소 유통업간 동반협력을 촉진
 - * 대형유통업과 중소납품업체와의 상호협력 방안도 함께 모색
- 중소기업체에 대한 맞춤형 교육·컨설팅 실시
 - 대형유통점의 전문가가 재래시장의 등 중소기업체(20개 권역)에 대한 판매·상품관리기법 등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
- 지역별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
 - 지역단위의 유통업 상생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상호협력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대·중소 유통업간 갈등 완화 및 동반협력기반 구축
 - * 대규모유통점의 중소기업체간 협력 MOU 체결, 교육·컨설팅 실시, 판로지원 및 시장개척, 지역사회 공헌 등 상호발전 방안 모색

【향후 추진계획】

- '유통산업 상생협력 박람회' 개최('07. 상반기)
 - 추진위원회 구성 등 추진계획 수립, 홍보, 참가 업체모집('06.4/4분기)
- 중소기업체에 대한 맞춤형 교육·컨설팅 실시('06.7~12월)
- 지역별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구성·운영('06.4분기)
 - * 실태조사 실시 및 3개 권역(경기, 경남, 충·남북)을 시범지역으로 지정·실시 후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
-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등을 위한 '유통산업상생협력 박람회' 개최
 - * 개최시기 및 장소 : 2007.5월(COEX)
 - * 주최 : 대한상의, 체인스토어협회 등(후원: 산자부, 중기청 등)

【추진현황】

- 대기업의 해외진출에 따라 협력기업의 동반진출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
 - * 대·중소기업 합동 해외전시회 참가, 수출상담회 개최, 중소기업의 대기업 글로벌 네트워크 편입 지원, 해외플랜트 공동 진출을 통해 중소기업 기자재 사용 비율 제고, 대기업의 퇴직 수출인력을 활용한 중소기업 수출 확대 등
- 동서발전, 현대자동차, SKT, STX, 포스코 등 5대기업과 동반 해외진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체결(6.1)
- 대·중소기업 공동해외시장 개척단 파견(6.11~15)
 - * 동서발전, 협력회사 9개사를 필리핀(마닐라) 파견

【향후 추진계획】

- 대·중소기업 공동 해외 전시회 파견(하반기)
 - * 한전 및 협력기업(10개사) 중국 국제 고·저압 전기기기 전시회 참가지원
- 대기업 해외물류센터 중소기업 공동 활용 추진(하반기)
- 세계일류상품전(핀란드, 9월)에 대중소기업 공동 참가 유도 (대기업 4, 중소기업 16개사 참여 예정)
- 중소기업 수출지원단 사업 추진을 위한 수요 중소기업 발굴 (약 150개 중소기업 발굴 예상)
- 글로벌 자동차부품 주간(서울/대구, 10월) 행사에 글로벌 유력 메이커(GM, 닛산 등) 초청하여 글로벌 아웃소싱 지원(중소기업 200개사 참여 예정)
- 플랜트 사업타당성 조사 지원 및 「대중소기업 벤더협력 협의회」 개최 ('06.4분기)

【추진현황】

- 중소기업 해외수주 지원센터를 해외건설협회에 설립('06.4)하고 중소기업 건설업체 임직원 대상 교육 및 해외건설수주 성공사례 발표 실시('06.상반기중 3회, 266명교육)
- 중소기업 해외 건설인력 D/B를 구축하여 희망 중소기업에서 활용중(06.7월말 현재 864명 등록, 9명 취업, 80여명 상담중)
- 시장개척지원 자금('06년 10억원)은 20개사 20건에 대해서 762백만원을 지급('06.7)하였으며, 17개사 16건 483백만원 지원협약 체결('06.8)
- EDCF, KOICA 지원사업에 대한 중소기업 우대조치는 재경부·외교부와 지원방안 협의완료 및 건설업체 대상 홍보추진
- 알제리·아제르바이잔에 민간건설포럼 구축('06.6)

【향후 추진계획】

- 중소기업 해외수주 관련 교육기회 확충('06년말까지 총9회, 800여명 교육예정) 및 구축된 인력D/B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인력 알선하고 장기적으로 인력 pool구성을 통한 인력관리의 효율화 추진

17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강화

【추진현황】

- 중소 하도급업체가 거래중단 등을 우려하여 신고를 기피하는 문제 해결 및 범위반 사전예방을 위하여 '99년부터 실시

	'99	'00	'01	'02	'03	'04	'05	'06	'07
조사대상업체(천개)	3	20	25	30	35	40	50	90	100
(원사업자수)	(1)	(4)	(8)	(8)	(9)	(10)	(12)	(20)	(25)

- 조사결과, 현금성결제 증가 등 하도급거래 관행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어 왔으나 아직도 범위반 혐의의 절대수준은 높은 실정

<하도급거래 개선 및 피해구제 결과>

	04	05	06
하도급범위반 혐의업체비율(%)	65.8	58.5	55.0
현금성 결제업체 비율(%)	79.1	80.3	82.5

* 공정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각년도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조사(06.5)에서도 하도급거래관행은 개선

구 분	03	04	05
불공정거래 체감 비율(%)	28.2	31.2	24.9
현금성 결제업체 비율(%)	61.2	64.2	68.1

* 공정위의 조사결과와 차이가 나는 이유는 공정위는 법적규제가 있는 하도급거래만을 대상으로 하고, 중기협은 일반거래까지 조사내용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

【향후 추진계획】

- 서면실태조사 후속 현장조사 실시
 - 범위반 혐의업체에 대해 자진시정 촉구 및 시정조치(8~12월)
 - 범위반혐의 불인정 및 자진 미시정 업체 현장조사(12월)

18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강화

【추진현황】

□ 대·중소기업간 수·위탁거래시 물품대금의 지급실태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96년부터 매년 조사

* 근거법령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 불공정행위 업체에는 시정조치 및 신용평가기관에 통보

□ 추진실적

○ '05년 이전 실태조사

구 분	조사업체수	적발 및 시정조치	우수기업	불공정기업
2003	563	172	292	31
2004	605	102	373	15
2005	1,016	246	294	31

*우수기업 : 납품대금을 법정기일 60일 이내에 전액지급 1천만원 이상

*불공정기업 : 납품대금을 법정기일 60일 초과하여 지급하고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등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미지급금이 1천만원 이상

○ '06년 정기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 위탁기업 1,000개사를 대상으로 납품대금 결제조건, 약정서 교부여부, 과도한 단가인하 등 불공정행위 전반 조사(6~8월)

- 플라스틱, 철강제품 11개 품목의 환율, 원자재가 변동에 따른 납품단가 변동실태 조사(5~6월)

【향후 추진계획】

□ 하반기 중 수탁기업(1,500개) 실태조사 추진(9~12월)

□ 자동차·전자 부품중 35개 세부품목을 선정하여 납품단가 변동 현황을 조사(6~12월)

【추진현황】

- 대기업들이 원자재가격 상승 등 경영상 부담을 중소기업에게
납품단가 인하를 통해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증가

* 납품단가 인하율(중기청 조사, %) : ('01)△26 → ('02)△39 → ('03)△6.6

- 부당 하도급단가 인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부당 하도급 단가
인하 신고센터」 운영 ('05.1.1부터 연중)
 - 구체적 혐의가 있을 경우 무기명신고에 대하여도 현장조사 실시
 - 신고센터 운영 실적 및 사건처리 실적('06.7.31) : 총 26건
 - 수급사업자 온라인 커뮤니티를 구축하여 업종별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토론할 수 있도록 지원('06.7)

【향후 추진계획】

- 부당 단가인하 신고센터 신고요령 안내메일 배포 (매월 1회)
-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과 연계하여 활성화
유도 ('07년부터)
- 불공정하도급거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 추진 ('07년)

20 유통분야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 강화

【추진현황】

- 대규모 유통업체에 대해 현장조사 실시('05.11월)
 - 3개 할인점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시정조치('06. 6월)
- 대규모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체계 구축
 - 신고포상금제('05.4월) 및 사이버신고센터('05.9월)를 운영하고, 납품업자들에게 피해구제사례 등에 관한 메일서비스 실시
 - 경품고시 위반 혐의 사업자에 대한 서면조사 실시('06.5월)
 - 납품과정상의 애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간담회 개최('06.5월)
 - 대형유통업체 39개에 대해 서면실태조사 실시('06.6월)
 - 납품업체 3천개에 대해 서면실태조사 실시('06.7~8월)

【향후 추진계획】

- 범위반 혐의가 높은 대형유통업체 현장조사 실시('06.10~12월)
- 업계의 거래실태를 반영하여 대규모 소매점업고시 개정('07년)

【추진현황】

-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상생협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 관건
- 현재까지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위의 정책과 타부처의 관련 정책이 **개별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정책 시너지 효과가 부족
 - 향후에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의 효과적 개선을 위해 공정위의 현장조사 및 제재강화 외에도 **부처간 정책공조***가 필요
 - * 공정거래 우수업체에 대하여는 업체선정 등에 있어 인센티브폭 강화, 불공정거래 상습업체에 대하여는 금리차등화 등 불이익 제공을 공동으로 추진
- 공정위 주도로 **8개 부처간 협력네트워크** 구축관련 1차 회의 개최(06.4월)
 - * 8개 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조달청, 중소기업청, 금융감독원
 -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처간 긴밀한 정책공조를 추진하기로 합의

【향후 추진계획】

- 상습 불공정거래 기업명단과 거래우수업체 명단을 공유하여 **범정부 차원의 불이익과 혜택**을 공동으로 부여
- 공정위는 이와 관련된 업체 명단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각 부처는 소관 정책 추진을 통하여 반영(06.하반기)

22 하도급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 강화 및 하도급법 체제개편

【추진현황】

-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미약하여 반복적인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강화가 필요

* 최근 3년간(03.6.26-06.6.26). 하도급법 3회이상 위반 업체 318개사

<상습위반업체 및 조치 현황>

법위반 횟수	3회	4회	5회	6회	8회	11회	계
업체 수	263	38	11	3	1	2	318

- 종전, 대표 조치유형별 벌점부과방식에서 행위유형별 벌점 부과방식으로 전환하고, 반복 법위반사업자에 대한 벌점누진제도 도입(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 '06.2월)
- 현행, 하도급법은 독과점적인 원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미흡하고 일부 불합리한 규정 등으로 법 집행의 실효성이 약화되어 하도급법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

【향후 추진계획】

- 과징금 부과고시를 제정하여 법 위반자에 대한 조치 강화
- 하도급법 체제 개편을 위한 TF 운영 및 초안 마련('06. 하반기) 및 전반적인 개편을 추진('07년)
 -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운영하여 법체제 전반에 대한 검토 후 법개정 초안 마련('06. 하반기)
 - 하도급의 정의와 적용요건, 상습 법위반 사업자 명단의 언론 공표제도 등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도 검토

【추진현황】

- 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 하도급 정보망 구축 등을 통한 하도급 거래의 공정·투명화를 지속 추진
 - 원도급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관리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하도급자 선정방식·기준·관리계획 등의 적정성을 발주자가 심사
 - * 건설산업정보망에 하도급관리계획서 내용을 입력하여 업체 선정에서 하도급 공사 전반에 이르는 과정을 수시관리
 - 하도급정보망 구축을 통해 하도급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보량 확대에 다단계 하도급 적발 기능도 강화
 - * 업체선정, 기성금 지급 등에 자동경보장치를 가동하고 경보발령 또는 하도급 업체 이의제기시 조사·처벌
- 하도급관리 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자가 검토·관리하는 방안을 반영한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 입법예고(7.25)
 - 입찰시에는 개괄적인 관리계획을 신고받고, 계약시에는 하도급업체, 금액 등 구체적 계획을 제출받아 세부관리
 - 하도급 정보망 구축을 위한 예산(10억원) 확보

【향후 추진계획】

- 금년중 하도급정보망 시스템 설계 완료, '07년 상반기 제도정비 및 홍보를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

※ 7.26 국무총리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시 추진방안 확정

【추진현황】

□ 건설근로자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대책 마련

- 양극화,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건설기능인력 복지증진 등 육성대책 마련

□ 주요 내용

- 건교부 및 지방국토관리청에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직접 신고를 접수하여 조사처리('06.7)

- 공공/민간 발주자별 신고처리 세부절차 마련 등으로 활용도 제고를 지속추진중

-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 등 제도개선 T/F 구성('06.7)

- 건교부 주관으로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도개선 T/F를 구성

- 불법 하도급 근절, 건설근로자 복지증진 관련 노동계 건의 사항 및 중장기 제도개선 과제를 검토하고 부처간 이견조정 등을 통해 종합대책 마련중

【향후 추진계획】

□ T/F 정례운영을 통해 8월중 종합대책의 기본 방향을 확정하고 9월까지 최종안 및 제도개선 로드맵 제시

【추진현황】

- 임치제도는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에 소스코드를 맡기는 것으로써 98년부터 프로그램심의위원회에서 SW임치제도를 운영 중이나 아직 활성화되고 있지 않음

* 임치제도 이용시 SW개발 기업의 폐업·파산으로 사후 유지보수가 단절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기술의 대기업 유출을 방지하는 역할도 수행

< SW임치제도 운용 현황 (단위 : 건) >

'99	'00	'01	'02	'03	'04	'05
3	6	5	4	13	68	82

- SW임치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SW사업자 선정시 임치기업을 우대하도록 SW기술성평가기준을 개정

【향후 추진계획】

- “SW기술성평가기준” 개정('06년말)

【추진현황】

- 미래 성장 동력인 IT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대·중소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자발적 하도급 공정거래 정착 및 확산 유도가 필수적
 - IT분야별로 대·중소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주기적 점검과 우수사례집 발간('06.5월) 등을 통해 대·중소상생협력 분위기를 확대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한계
 - * 기간통신사업자-IT중소제조업체 상생협약 체결('05.4월)
 - 대형SI업체-중소SW업체간 상생협약 체결('05.12월)

【향후 추진계획】

- 통신사업분야의 해외구매 프로세스와 상생협력 사례를 벤치마킹 하여 국내 구매프로세스에 개선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제시('06.8월)
- 통신사업자와 중소기업 의견수렴, 이행지표 개선 및 설문대상 중소기업을 확대하여 이행지표 점검('06.12월)
- IT분야 상생협약 점검지표의 법적 근거 마련
 - 전기통신기본법, SW산업진흥법 등 정통부 소관 개별 법률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 지수산정·공표 등에 관한 명문규정 마련
- IT기업 정책지원시스템 구축('06.12월)
 - 동 DB에 IT기업 불공정 하도급 거래 현황 등을 IT업종별로 체계적으로 관리강화

27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심사 개정시 상생협력 정도 등 반영

【추진현황】

- 현행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심사시 “정보통신산업과 통신시장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라는 항목으로 일부(6점/100점)가 반영되고 있으나, 평가항목의 구체성이 일부 결여됨

<현행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심 사 항 목	심 사 시 고 려 사 항 (현 행)
정보통신산업과 통신시장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6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법인(설립예정법인의 경우 대주주, 주요주주)의 정보통신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 정보화확산, 고용창출 등 국민 경제에 대한 기여실적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지 않는 허가신청법인, 설립예정법인의 대주주 및 주요주주는 타 분야에서 국민경제에 기여한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및 실현가능성 여부를 평가 ○ 신청법인(설립예정법인의 경우 대주주, 주요주주)의 전기통신사업법 등 전기통신사업 관계법령 준수, 공정경쟁 환경조성 등 통신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대한 기여 실적 등을 평가

-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심사시 “정보통신산업과 통신시장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 항목을 상향 조정하거나,
 - 심사시 고려사항에 대·중소상생협력 정도, 불공정 거래건수 등을 고려하도록 개정

【향후 추진계획】

-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심사 기준” 개정('06년말)

【추진현황】

- 범부처 연구관리기준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별표3)에서 R&D과제 선정평가지 감점 부여 항목에 대한 공통 기준을 정하고 있음
 - 현행 감점 항목은 최종평가 최하위등급 또는 하위등급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신규과제 신청시 또는 연구과제 선정후 협약포기 또는 연구수행 도중 연구포기 경력이 있는 경우로 규정
- 하도급 벌점이 일정수준 이상인 업체*가 주관연구기관이 되어 신청하는 국가 R&D과제에 대해 선정평가 단계에서 일정 범위내 감점을 부여 추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
 - * 공정위는 매년 하도급 벌점이 일정 수준이상의 상습 범 위반업체 명단을 각 부처에 통보 예정

【향후 추진계획】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감점 부여항목에 하도급 불공정기업 신청과제 항목을 추가토록 개정 추진('07년)
 - 각 부처는 이를 토대로 소관 R&D사업 평가지침에 반영하여 향후 R&D사업 추진시 하도급 불공정기업에 대해 감점 부여

【추진현황】

□ 현행 하도급 기업의 계약금액 조정제도 현황

- 공공구매 계약시 계약체결 후 90일 경과하고, 계약금액 3% 이상 상승시, 계약 금액 조정을 허용중(국가계약법 제19조, 시행령 제64조)
- 구매계약 상대방인 원도급자에 한해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허용
 - * 원사업자가 하청업체의 계약금액 조정요인 발생을 무시할 경우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없는 실정

□ 문제점

- 계약총액 변동시에만 금액조정을 허용하고 있어 원자재 가격, 환율변동 등으로 단품가격 급등 시에는 실효성 미흡
 - * 철강파동시 단품가격은 급등하였으나 총액기준으로는 3%이상 변동이 없어 조정대상이 되지 않는 등 실효성 미흡
- 하청·재하청 기업의 경우 부분품 가격인상 등 계약조건이 변하더라도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어려워 충분한 보호가 미흡

【향후 추진계획】

- 하청업체의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있을 경우 원도급 계약자가 이를 발주기관에 신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추진(국가계약법 시행령)
- 공공구매에서 특정품목의 가격 상승시에도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단품슬라이드 제도 도입(국가계약법 시행령)
 - * 건설표준계약서상의 계약금액 조정조항을 보다 구체화하여 민간에서도 이를 활용하도록 유도

【추진현황】

- 공기업의 성과공유제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8조 5항)는 마련되었으나,
 - 본격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제15조, 재정경제부령)상 수익계약범위 제한 완화가 필요
 - *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 개정협의중
- 아울러 공기업의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성과공유제 추진실적을 반영할 필요

【향후 추진계획】

-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 제15조 개정 협의('06.하반기)
- 공기업(한전) 성과공유제 시범사업설명회 개최('06.8월) 및 홍보를 통해 타 공기업의 성과공유사업 참여·확산 추진
 - * 해당 공기업(24개) : 한전 등 13개 정부투자기관, 교통안전공단 등 9개 공단
- 공기업이 수행한 중소기업 지원계획과 추진실적을 평가·점검하여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노력과 성과”에 반영
 - * 기획예산처 평가지표 : 책임경영구현 및 공익성제고를 위한 노력과 성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노력과 성과)
 -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1~3항

【추진현황】

□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기업자율적인 공정거래추진이 필요

- 이를 위해 바람직한 계약모델 및 협력업체 선정가이드라인, 하도급관련 기업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마련('06.6월)

□ 주요내용

- 계약체결과정에서 계약 당사자들이 일반적으로 준수해야 할 바람직한 사항*과 지양해야 할 사항**을 제시

* 서면의 사전교부, 합리적인 단가 결정, 명확한 납기, 객관적인 검사기준, 예측가능한 계약해제·해지사유 등

** 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및 부당 반품행위의 유형, 자사 원인에 기인한 비용 전가행위, 보복 조치 행위 등

- 대기업의 협력업체 선정 및 퇴출기준에 대한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 설정

- 일정규모 이상의 하도급거래는 기업이 내부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체결과정 등을 자율적으로 심의토록 함

【향후 추진계획】

□ 가이드라인 사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부여(과징금 감경) 및 적극적 사용기업에 대하여 포상실시

【추진현황】

- 16개 시·도의 상공회의소·건설협회 등과 공동으로 사업자의 **범위반 예방을 위해 교육을 실시**(‘06년 상반기 6,086명 교육)
- 원사업자에 대해 **하도급법 홍보책자 2만부를 배포**하고, 매월 정책고객에 대해 **온라인홍보 실시**

【향후 추진계획】

-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의 임직원에 대한 **교육명령제**를 도입하여 법령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발생하는 범위반을 방지
 - 하도급법 위반 시정을 위한 **교육명령지침 제정**(06.10월)
 -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자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고발조치**
- 수도권 및 지방사업자에 대해 **상시교육체계 마련**(06.하반기)
 - 수도권은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과 공동으로 **분기별 교육체계 마련**
 - 지방은 건설협회·중소기업 중기협중앙회 등과 공동으로 **반기별 교육 추진**
- **수급사업자 온라인커뮤니티**를 통해 하도급공정거래 온라인 교육 및 **홍보실시**(‘06.하반기)

【추진현황】

- 중소기업은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해 법률지식의 부족, 시간·재정상의 문제 등으로 대응을 포기
- 분쟁사항에 대한 법률자문, 해결방안 제시 등 신속한 분쟁조정 지원을 위해 하도급 분쟁도우미 제도 운영중(06.4월)

* 지원실적(06.7월 현재) : 13건 접수(11건 완료(조정 진행중), 진행 2건)

<수위탁 분쟁도우미 제도 운영방식>

- 납품대금 미지급, 부당한 거래단절 등 수·위탁거래 관련 법령 위반, 특허침해 등의 해결을 위한 전문 법률자문
(비용지원 : 업체당 연 2회, 100만원 범위내)
- 자문내용을 토대로 당사자간 자율적인 조정을 유도하고(대중소기업협력재단), 자율조정 실패시 조정안을 권고(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향후 추진계획】

- 신문, 라디오 등 언론매체를 통한 지속 홍보(연중) 및 분쟁해결 우수 사례집을 발간하여 중소기업에 배포(06.12월)
- '06년도 운영실적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사업확대 추진(07년)

【추진현황】

- 대·중소기업간 및 중소기업간 거래·기술·인력·판로 등 협력 활동을 연계하고 구매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내에 On-Line 협력알선 네트워크를 구축 중 ('06.8월 현재 시범운영)
 - * 협력알선 사항 : 기업간 거래알선, 공개입찰 정보제공, 기술·설비·특허 이전, 특허이전, 공동개발 협력알선 등
- 우수 협력사례 및 불공정사례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정책연구 및 인센티브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DB 구축
 - * 기업간 협력 관련 지원정보, 국내·외 협력사례,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DB화하여 협력알선 네트워크에 탑재할 계획

【향후 추진계획】

- 대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50대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개최(06.7~8월)
- 시범운영('06.8~11월)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 후 일반기업들에게 공개 운영('06.11월 이후)
- 협력DB 구축을 위한 사례조사 용역 추진('06.9~11월)

【추진현황】

- 중소기업간 협업(ICMS)이란 핵심역량 분야만 직접수행하고 나머지는 상호위탁협업을 통해 조달하는 사업모델

* ICMS : Intergrated Contract Manufacturing & Service

- 글로벌 경쟁격화, 제품수명주기 단축 등 경영환경 불확실성 증가로 중소기업간 협업 필요성은 증가하는 상황

* 타기업과 제휴 또는 협력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비중 60%(중소기업간 협력에 관한 수요조사, '05.8)

- 현재 ICMS모델 확산을 위해 한국ICMS협회가 활동 중이나 협업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아직은 초보적 단계

* 839개 회원사로 50개 컨소시엄 구성('06.7월 기준)

【향후 추진계획】

- 협업생산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 추진(중소기업진흥및 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06.하반기)

- 협업의 정의, 협업계획의 승인 및 취소, 협업사업의 지원, 협업 지원센터 지정 등

- 협업사업 활성화 지원('06.하반기)

- 협업·R&D 지원 및 협업 시설자금 마련 협의

- 협업정보시스템 구축 등 협업 인프라 구축

【현황 및 필요성】

- 협동조합의 주요 보호수단이었던 단체수의계약이 폐지('07년) 됨에 따라 조합의 공동사업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
 - * 협동조합 공동사업 현황('05) : 단체수의계약(81%), 공동구매(15%), 공동판매(4%) 등
-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협동조합 스스로의 경영혁신 미흡으로 자조 기능 약화
 - * 최근 3년간 적자발생 조합추이 : 19.5%('01)→20.9%('02)→25.4%('03)
- 이에 따라 협동조합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공동사업 운영을 통해 협동조합을 중소기업 협력의 구심체로 육성할 필요

【향후 추진계획】

- 공동 기술개발 지원
 - 조합을 통해 회원사의 공동 애로과제 발굴 및 원천기술 개발을 위해 과제 발굴 비용 및 개발비 지원
- 협동조합 A/S센터 구축 및 운용
 - 업종별 조합을 중심으로 하자보수·A/S지원, 유지관리 등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 * 사업내용 : 하자보수 지원시스템 구축, 하자보수 인력보강, 콜센터 설치 등
- 협동조합을 통한 공동사업 분위기 확산
 - 국내외 공동사업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고 일본 협동조합 성공모델 연구·분석

37 상생협력 지식커뮤니티 구축

【추진현황】

- '상생협력 지식커뮤니티' 구축을 통해 상생협력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강화하고 상생협력 공감대를 확산
 - 「상생협력연구회」 설치, 상생협력이론서 발간, 상생협력 지역순회 토론회·국제컨퍼런스 개최 등 상생협력 확산 추진 계획
 - 「상생협력연구회」 현판식 및 '창립기념세미나' 개최 ('06.7월)
 - * 학계·업계·연구기관 등 각계 전문가 40여명으로 구성

【향후 추진계획】

- 상생협력 지역순회 토론회 개최 ('06.9월)
- 상생협력 이론서 발간 ('06.9월)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국제컨퍼런스 개최 ('06.10월)
 - * 해외 주요석학 및 상생협력 이론가, 학계·업계·연구소등 초청

【추진현황】

□ 건설공사 현장 상생협약체 구성 및 정부내 상생협약체 구성을 통한 상생협력 유도·확산

□ 주요 내용

○ 건교부 및 산하기관 공사현장중 18개 사업장*을 선정, 상생협약체(발주자, 원·하도급업체) 구성완료('06.3월)

* (국토관리청) 6개 도로공사 현장 / (산하기관) 주공·수공·도공·철도 시설공단·인천국제공항공사 발주공사 (각 2건)

- 시공·재무·기술지원 관련 협력과제 발굴을 위한 협력회의 개최 및 협약체별 홈페이지 구축완료('06.5월)

○ 건교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업계,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건설산업상생협력위원회」* 구성('06.6월)

* 재경·노동·공정위 국장급, 협회 및 대·중소기업 대표 등

【향후 추진계획】

□ 상생협약체의 운영성과 평가 및 종합매뉴얼 작성('06.10월)

□ 상생협력 표준모델 및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하고 상생협력 우수사례 포상 및 대국민 홍보 실시('06.12월)

□ 건설산업상생협력위원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입찰 제도, 기능인력 육성 방안 등 지속논의

【추진현황】

-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과정에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우수 사례 평가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 확산
- 주요 내용
 - '05년까지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과정에서 심사기준에 '기업의 사회적의무' 추진실적 평가항목은 있었으나
 - 대·중소기업간 협력정도를 측정하는 평가항목이 부재
 - * '05년까지 기업 노사의 사회봉사활동 및 기업이익의 사회환원 등 실적평가 (총 800만점 중 50점 배점)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우수사례 실적 평가” 항목 마련('06.6월)
 - 내용 : '06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 선정계획」 수립시 서류심사 기준 등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우수사례 실적 평가” 항목 마련
 - * 기업의 노동정책 등의 이행정도(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우수사례 실적 등) 실적평가(총 1000만점 중 50점 배점)

【향후 추진계획】

- 지역단위에서 6개 지방노동청별로 「노사문화 우수사례발표 및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사례 경진대회」 추진('06.8월)
- 중앙단위에서 「노사문화 우수사례발표 및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사례 경진대회」 추진('06.12월)
- 우수사례집 제작·배포 등을 통하여 우수 협력활동을 적극 홍보, 분위기 확산('07.1분기)

【추진현황】

□ 산업현장의 상생협력의 임·단협 확산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격차 완화

□ 주요 내용

○ 각종 교육, 간담회 등을 통해 '상생협력의 임·단협'*에 대한 공감대 확산·지원

* 대기업을 위한 정규직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그 여유분을 협력업체 및 비정규직 임금개선에 활용

○ '지역별 임금직무혁신네트워크' 등을 이용하여 대표기업의 임금수준 등 실태를 시범 조사하는 등 상생협력의 임·단협의 기초자료 제공

○ '상생협력의 임·단협'에 대한 공감대 확산·지원을 위한 자료 작성·배포('06.4월)

○ '지역별 임금직무혁신네트워크' 구축·운영(영남, 충청, 호남)

【향후 추진계획】

□ 각종 교육,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상생협력의 임·단협'에 대한 공감대 확산·지원

□ '지역별 임금직무혁신네트워크' 등을 이용하여 대표기업의 임금수준 등 실태조사 시범실시